청 성 사 달

(청렴한 소리가 사방으로 널리 퍼지다)

영주국토관리사무소 청렴 소식지 Vol.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특집)

국토교통부

청렴韓영주국토관리사무소

목 차

1. 부서장 인사말씀 ---- 3

2. 영주국토관리사무소 청렴활동 실적 ---- 4

2-1. 6월 실적 ---- 4

2-2. 7월 실적 ---- 6

2-3. 8월 실적 ---- 7

2-4. 9월 실적 ---- 11

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요약 ---- 14

4. 청탁금지법 FAQ ---- 16

5. 청탁금지법 퀴즈 ---- 27

1 부서장 인사말씀

‘깨끗한 대한민국’, ’청렴한 국토교통부’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불과 몇 년 전과 비교해도 눈에 띄게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부는 상대적으로 예산 규모가 큰데다 부정과 부패가 발생할 개연성 있는 사업을 주로 다루다 보니, 그 어느 부처보다도 청렴과 반부패 시책에 대해 노력을 기울이고 관심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청렴에 있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법이 시행되기까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법이 시행되었다는 사실은 그만큼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반부패 요구 수준이 높아졌다고 해석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본 소식지는 한정된 지면 안에 청탁금지법의 정보를 최대한 많이 담기위해 노력했습니다.

시대는 바뀌기 마련이고 국민들의 의식수준은 점점 더 높아질 것입니다. 예전과는 달리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환경에 대응하려면 변화에 적응하는 것을 넘어서 변화를 주도하려는 마음가짐이 중요할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 변화에 맞춰 더욱 깨끗한 대한민국, 더더욱 청렴한 국토교통부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2016년 9월30일

구조물과장 박 진 우

2 청렴활동 실적 [6월]

청렴연의(淸廉漣漪) 프로젝트 시행(6.20.)

2016년 청렴연의 프로젝트 시행 계획

잔잔하게 이는 잔물결(연의)에 옷자락이 젖듯 생활·업무 속의 청렴을 실천하여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 및 청렴 우수부처로 도약

1. 관련근거

가. 2016년 자체 반부패·청렴대책 세부시행 계획(운영지원과-1901)

2. 개요.

가. 청렴 정책에 대한 피로감을 줄이면서 동시에 청렴의 내재화를 유도
- 의무적인 직장교육, 청렴대책 제출 할당 등을 지양하고 자연스럽게 '무의식의 청렴실천' 유도

나. 공익침해·부정부패 신고 홍보

3. 운영방안

가. 업무에 활용 가능한 실용적인 소품 제작 및 배포를 통해 전 직원의 자연스러운 청렴 실천 가능

나. 청렴 볼펜 제작 및 배포

1) 문 구
- '건강은 사람을 살리고, 청렴은 사회를 살린다.'
- '당신의 양심에 안심을 더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2) 대 상 : 우리 소 전 직원

3) 예산과목 : 7040-300-210-01(행정능률향상, 일반수용비)

4) 금 액 : 350,000원

5) 배포일시 : 6월 중(6월 변화관리 아카데미 실시일)

하계휴가 대비 청렴서한 발송(보수과 6.28.)

청렴도 향상 협조 서한

국토교통부

안녕하십니까? 영주국토관리사무소 소장입니다.

평소 국토교통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사무소에서는 도로점용허가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만족도 제고와 청렴도 향상을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영주국토관리사무소에서는 민원만족도를 제고하고 직원들의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i) 민원처리상황에 대한 문자서비스 제공
ii) 도로점용허가 절차 처분시 간략을 전화설명제 및 이의신청제 마련
iii) 도로점용허가 가능여부를 좀 더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사전점도제 시행
iv) 도로점용(변경)허가 표준도 작성(www.cpermit.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노력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고객님들의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도로점용허가 과정에서는 1,000원 상당의 수입인지 이외에 어떠한 추가 비용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혹시 허가와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 공사 감리원, 설계대행사로부터 불친절행위나 부당행위, 금품/향응 등을 요구받을 때에는 결재로 이해 응하지 마시고, 반드시 국토교통부 부조리신고센터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부정부패 없는 투명하고 청렴한 행정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아낌없는 충고와 협력을 부탁드리며, 더욱 깨끗하고 청렴한 부처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 06. .

영주국토관리사무소장 김 동 현

국토교통부 부조리신고	- 인터넷 신고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부조리신고센타 - 우편신고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감찰팀 - 전화상담 : ☎ 044)201-3123 Fax : 044)201-5506

정부3.0. 국민과의 약속

외부 전문강사 초빙 청렴 특강(6.23.)

2016년 6월 변화관리아카데미 결과보고

1. 개요

- 일 시 : 2016. 6. 23. (목) 16:00~18:00
- 장 소 : 2층 대강당
- 참 석 자 : 37명
- 교육내용 : 청렴교육 및 정보 보안관리 교육
- 강 사 : 대구HRD 교육센터 장민영강사

2. 주요교육내용

☐ 청렴교육

- 직원간 유대 및 소통 강화로 즐거운 직장문화 조성, 봉사활동 등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 실현 대해 강의
- 청렴개선방향을 토론 및 해결방안을 공동 모색
- 우리 직원들의 청렴실천을 유도하고, 우리 사무소 깨끗한 이미지를 제고방안 모색

☐ 정보 보안관리 교육

- 개인정보 처리자의 정보처리 시 유의사항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수집금지 및 보안철저
- PC 해킹 대비 예방 교육

3. 행정사항

- 참석자 전원 상시학습 2시간 인정 및 변화관리마일리지 5점 부여

사 진 대 지

청렴교육

정보 보안관리 교육

2 청렴활동 실적 [6월]

공직기강 및 공익신고관련 직장 교육(7.19.)

자체 직장교육 결과보고

1. 교육개요

- ㅇ 일 시: 2016. 7. 19. (화) 16:00~17:00
- ㅇ 장 소: 2층 대강당
- ㅇ 강 사: 운영지원과장, 운영지원과 김형준
- ㅇ 참석인원: 소장 외 30명

2. 주요교육내용

가. 감사부서장 회의결과 전파교육(강사: 운영지원과장)

- ㅇ 교육자료를 중심으로 총리님 말씀 전파, '16년 하반기 공직복무관리 추진방향(국조실) 전달,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대비 계획 등 교육
- ㅇ 근무 상 고충이 있을 경우 담당 계장 또는 과장 외에도 운영지원과장과의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나. 공익신고 처리 절차 및 내용 교육(강사: 운영지원과 김형준)

- ㅇ 우리 부 공익침해대상 법률 안내
- ㅇ 공익신고 제도 안내 및 처리 절차 교육

다. 개인정보보호 교육(강사: 운영지원과 김형준)

- ㅇ 민원처리 시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피민원기관 또는 피민원인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내부관리 및 민원정보 관리 철저 요청
- ㅇ 국민신문고 관련 언론보도 사례를 통해 유사사례 방지 당부

사 진 대 지

청렴서포터즈 자체 청렴도향상 대책회의(7.28.)

제2기 청렴서포터즈 활동 보고

1. 활동개요

- ㅇ 일 시 : 2016. 7. 28. (목) 17:00~18:00
- ㅇ 장 소 : 1층 소회의실
- ㅇ 참석인원 : 청렴담당자 김형준 외 6명

2. 주요활동내용

가. 자체 청렴도 향상 대책 회의

- ㅇ 소 자체 청렴 강의 및 복무 교육의 내용을 바탕으로 청렴도 향상 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토의
- ㅇ 관행개선위원회 안건 상정을 목표로 서포터즈 전체 활동시 마다 안건을 발굴 할 수 있도록 노력

나. 청렴 아이디어 토론회

- ㅇ 솔닛 청렴 공유방에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도입 가능한 청렴 시책을 발굴하고 적용 가능성에 대해 토의
- ㅇ 청렴 독서 토론회, 청렴 트리(Tree), 청렴 유적지 탐방 등 큰 예산을 수반하지 않는 시책 중에서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

다. 향후 활동 계획 논의

- ㅇ 기본적으로 유닛(Unit) 활동을 장려하여 구성원들의 참여 방법을 다양화 하고 참여 기회를 늘리는 방향으로 추진
- ㅇ 최소한 분기에 1회 이상 전 구성원이 모여서 활동 할 수 있도록 메아리 등을 통해 의견을 교환하고 활동 계획을 강구

3. 행정사항

- ㅇ 각 파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도에서 최대한 구성원의 활동 보장

사 진 대 지

2 청렴활동 실적 [7월]

행동강령 준수 모범 사례(선물 반환 7.29.)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행동강령 준수 사례

□ 개요

○ (時·所) '16. 7. 29(금) / 영주국토관리사무소
○ (내 용) 직무관련자(업무관련 민원인)가 보낸 선물 거절 및 반환

□ 상세내용

○ 2016년 7월 29일 오전 도로점용허가와 관련하여 민원인이 해당 노선 담당자를 찾아와 '잘 처리해를 것'을 부탁

○ **업무관련 민원인**은 「국토교통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 제1호 가목의 **직무관련자**임. 공무원은 같은 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됨**. (금액의 경중 무관)

○ 담당자는 「국토교통부 공무원 행동강령」 및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절의사를 분명히 밝힘

○ 해당 민원인은 담당자가 업무 차 자리를 잠깐 비운 사이 건강보조식품(시가 3만원 상당)을 몰래 놓고 감

○ 해당 담당자는 우리 소가 자체 제작한 행동강령 해설집 및 청렴소식지(청성사달 淸聲四達)의 부정청탁금지법의 해설 내용을 참고하여 즉시 청렴담당자에게 보고하였고, 청렴담당자는 경위 파악 후 멸실 및 훼손의 우려가 없으므로 택배를 통해 반송 조치 함

□ 행정사항

○ 해당 담당자 보호조치 및 청렴실천성과 마일리지 부여

- 국토교통부 클린 솔 자기보호센터에 관련 내용 등재
- 자체 청렴실천성과 인센티브 계획(Y-POD계획)에 따라 마일리지 가점 부여

○ 청렴한 영주국토관리사무소 대국민 홍보

청렴 영주국토관리사무소

사 진 대 지

[청렴연의]국토교통부 행동준칙 및 주요 행동강령 전파(7.28.)

경제혁신 3개년 계획, "3년의 혁신, 30년의 성장"

국토교통부 **영주국토관리사무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토교통부 행동준칙 및 주요 행동강령 전파

1. 운영지원과-1901호(2016.04.14)와 관련입니다.

2. '생활 속의 청렴실천, 업무 속의 청렴 실천'을 위하여 진행 중인 청렴연의(淸廉連漪)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아래와 같이 「국토교통부 행동준칙 및 주요 행동강령」을 전파하여 소 내 반부패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가. 전파내용: 국토교통부 행동준칙 및 주요 행동강령
나. 전파방법: 구내식당 및 청사 내 주요 장소에 부착 및 게재

붙임 국토교통부 행동준칙 및 주요 행동강령(안). 끝.

2016. 7. 28

주무관	과장	소장
협조자		
시행 운영지원과-4118		접수

우 36145 경상북도 영주시 장수면 장수로342번길 75 / http://pcmo.molit.go.kr
전화번호 054-630-0011 팩스번호 054-630-0029 / platina42@molit.go.kr / 비공개(5)
꿈꾸세요, 국민행복, 정부3.0이 함께 합니다.

청렴韓세상

국토교통부 행동준칙 및 주요 행동강령

행동준칙 1(더치페이)
직원 상호간 또는 산하기관·협회·업계 등과 식사, 모임 등을 할 경우 비용은 각자 부담하여야 함

행동준칙 2(골프금지)
'Field'에서 하는 골프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

행동준칙 3(과도한 음주나 유흥주점 등 술자리 금지)
공무원으로서 신체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정도의 음주나 유흥주점 등 술자리는 금지

행동강령 제13조(공용물의 사적 사용 ·수익행위 금지)
관용차량 등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 용도의 사용 ·수익행위 금지

행동강령 제14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 제한)
직무관련자 등으로부터 선물 또는 향응 수수 금지

행동강령 제17조(경조사 통지 및 경조금품 수수 제한 등)
직무 관련자나 직무 관련 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안되며, 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주거나 받은 수 없음

청렴 韓 영주국토관리사무소

2 청렴활동 실적 [8월]

[청렴연의]청탁금지법 관련 포스터 게재(8.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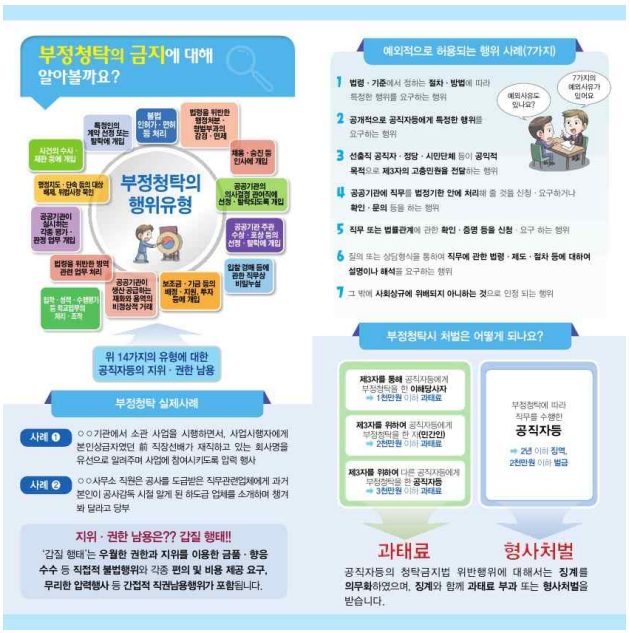

기관장 포함 전직원 사이버 청렴교육 이수 완료

경제혁신 3개년 계획, "3년의 혁신, 30년의 성장"

국토교통부

영주국토관리사무소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청렴교육 이수 독려(3차)

1. 우리 소「2016년 반부패 청렴대책 세부시행계획」에 따라 청렴교육 이수를 독려하니 미이수자(붙임 참조)는 **반드시** 이번 기수에 수료하시고 수료증을 운영지원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최소 이수시간 : **5시간**(사이버 청렴교육 총 이수시간 기준)
나. 교육신청 방법
1)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사이버교육센터(http://acti.coti.go.kr)
- 8기: **8.17(수)**부터 신청가능
2)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사이버교육센터(http://tilit.nhi.go.kr)
- 7기: **8.22.(월)**부터 신청가능

2. 청렴교육 이수 실적은 **2016.9.30.기준** 우리 소 반부패실적평가 및 BSC 성과관리에 반영되는 지표이므로 **조종원 및 방호원 등 외근직원들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는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청렴교육 미이수자 명단 1부.
2. 권익위 청렴연수원 사이버 교육 운영계획 1부.
3.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사이버 청렴학교 운영 계획 1부. 끝.

영주국토관리사무소장

수신자 보수과장, 구조물과장

2016. 8. 8.

주무관 과장 소장
협조자
시행 운영지원과-4285 접수
우 36145 경상북도 영주시 장수면 장수로342번길 75 / http://pcmo.molit.go.kr
전화번호 054-630-0011 팩스번호 054-630-0029 /platina42@molit.go.kr /비공개(5)
정부3.0,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4 청렴활동 실적 (8월)

청렴실천성과 인센티브 정기 포상(8.22.)

경제혁신 3개년 계획, "3년의 혁신, 30년의 성장"

국토교통부

영주국토관리사무소

경제혁신 3개년계획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청렴실천 성과 인센티브 평가결과 알림

1. 운영지원과-1900호(2016.4.14.)와 관련입니다.

2. 우리 소 "2016년 청렴실천 성과 인센티브 부여계획"에 따라 아래와 같이 상반기 청렴실천 성과 우수직원에게 포상(개별포상 예정)을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하반기에도 소속 직원이 반부패 청렴대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상내역	수 상 자	부 상	비고
최우수상(1명)	보수과 운전서기보 성부기	전통시장상품권 10만원	개별 포상 예정
우수상(3명)	운영지원과 공업서기보 권기운	전통시장상품권 5만원	
	보수과 시설주사보 박후식		
	운영지원과 기계운영주사보 이용재		
장려상(5명)	구조물과 시설주사 백운철	전통시장상품권 3만원	
	운영지원과 행정서기보 천영희		
	보수과 기계운영주사보 황병대		
	보수과 운전서기 전봉주		
	보수과 국도관리원 박성민		

붙임 2016년 상반기 청렴실천 인센티브 집계 내역 1부. 끝.

영주국토관리사무소장

수신자 보수과장, 구조물과장

2016. 8. 22

주무관 과장 소장

협조자

시행 운영지원과-4473 접수

우 36145 경상북도 영주시 장수면 장수로342번길 75 / http://pcmo.molit.go.kr

전화번호 054-630-0011 팩스번호 054-630-0029 / platina42@molit.go.kr / 대국민 공개

정부3.0,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청탁금지법 사례집 제작 및 배포(8.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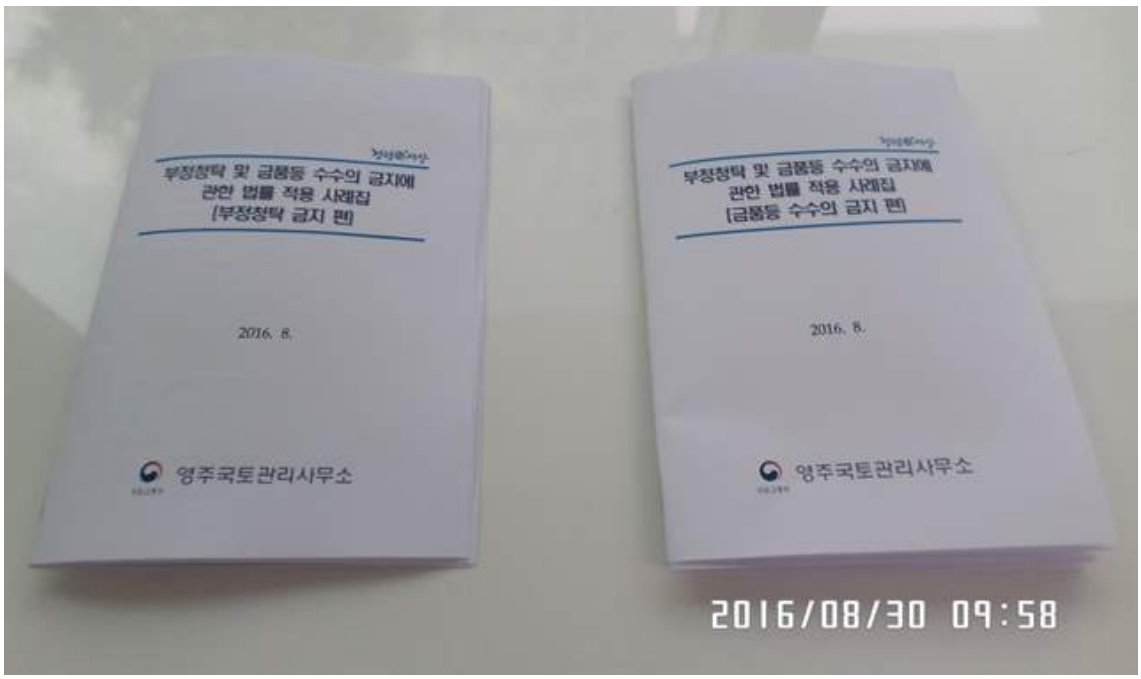

4 청렴활동 실적 (8월)

청렴실천성과 우수자 특별 포상(공모전 특선)

경제혁신 3개년 계획, "3년의 혁신, 30년의 성장"

국토교통부

영주국토관리사무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청렴실천 우수자 특별 수시 포상

1. 운영지원과-1900호(2016.4.14.)와 관련입니다.

2. 우리 소 "2016년 청렴실천 성과 인센티브 부여계획"에 따라 반부패 분위기 확산에 크게 기여한 직원을 특별 포상하여 반부패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가. 포상대상자: 운영지원과 기계운영주사보 이용재
나. 포상 사유: 청렴소식지 청성사달 표지 작품 제작 및 기증
다. 포상 방법: 2016년 상반기 청렴실천 인센티브 30점 가점 부여
솔넷 및 부산청 청렴홍보방에 작품내용 명시
자체 청렴소식지 청성사달에 인터뷰 2페이지 할당

붙임 청성사달 표지 작품 1부. 끝.

주무관 과장 소장 2016. 8.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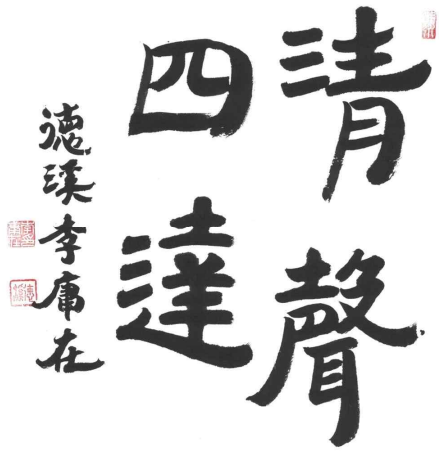

자체 청렴소식지
청성사달 표지 작품 기증
공로 인정

운영지원과장 주재 공직기강 확립 교육(8.2.)

공직기치 교육 결과 보고

1. 교육개요

- 일 시 : 2016. 8. 2. (화) 17:00~18:00
- 장 소 : 2층 대강당
- 강 사 : 운영지원과장
- 참석인원 : 소장 외 51명(무기계약직 포함)

2. 주요교육내용

가. 청장 주재 확대간부회의 내용(공직기치 관련) 전파 교육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합헌 결정에 따라 변화된 환경에 대비해 충격 최소화 당부
- 법 시행 초기 해석 및 적용에 있어 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전 직원은 품위유지 및 공직기강 확립에 각별히 유의할 것

나. 청탁금지법 주요 내용 해설

- 자체 제작한 청렴 소식지 배포
- 행동강령 Q&A 및 청탁금지법 주요 내용 수록
- '사회상규' 개념이 모호하므로 품위유지 철저
- 직무관련자와 외부에서 불필요한 만남 자제
- 대가성이 없어도 직무관련성이 있는 접대 등 주의

3. 행정사항

- 정기적으로 청렴소식지를 발간하여 홍보
- 8월 중 청탁금지법 해설 자료를 발간하여 배포 예정

사 진 대 지

4 청렴활동 실적 (8월)

국토교통부 청렴 UCC 응모작 제출(공익신고자 관련 주제, 3분 분량)

그들은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었을 뿐이다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었을 뿐이다

국가는
그들을 위해 제도를 마련해야하고
사회는
그들이 공익의 수호자임을 알려야하며
국민은
그들의 용기가 희생되지 않도록 깨어있어야 한다

영주국토관리사무소 전 직원은
공익신고자에 대한 인식 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 청렴활동 실적 (9월)

직원 대상 기관장 명의 청렴 서한 발송(9.6.)

청렴 영주국토관리사무소

존경하는 영주국토관리사무소 직원 여러분

유래없는 유턴(U-Turn)태풍과 잇따른 태풍의 북상으로 전국이 수해로 몸살을 앓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관내에서 큰 사고 없이 추석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국도관리의 전문가인 여러분 모두의 노고 덕분일 것입니다. 이 서한을 통해 그동안 힘들고 어려운 시간도 있었겠지만 묵묵히 국민을 위해 봉사하여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음 주면 풍요로운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옛말에서 알 수 있듯 추석은 모두가 기다리는 민족의 명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풍요로움이 깃들기를 바라며 추석을 맞아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토관리사무소는 국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국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봉사하는 기관입니다. 명절을 맞이하여 작업 수행 중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더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귀경길에도 안전운전을 하시어 즐거운 추석, 편안한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 9월28일 시행 예정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속칭 '김영란법')과 관련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의 시행을 계기로 그 동안의 공직 생활을 돌이켜보고 깨끗한 대한민국, 청렴한 영주국토관리사무소를 만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淸聲四達(청성사달) 청렴한 소리가 사방에 이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청렴한 말씀이 영주국토관리사무소의 사방으로 널리 퍼지길 기원합니다.

2016년 9월 6일

영주국토관리사무소장 김 동 현

도로점용 관계자 대상 기관장 명의 청렴 서한 발송(9.6.)

청렴도 향상 협조 서한

국토교통부

안녕하십니까? 영주국토관리사무소 소장입니다.

평소 국토교통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사무소에서는 도로점용허가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만족도 제고와 청렴도 향상을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영주국토관리사무소에서는 민원만족도를 제고하고 직원들의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i) 민원처리상황에 대한 문자서비스 제공
ii) 도로점용허가 불허 처분시 간부급 전화설명제 및 이의신청제 마련
iii) 도로점용허가 가능여부를 좀 더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사전검토제 시행
iv) 도로점용(연장)허가 표준도 작성(www.cpermit.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노력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고객님들의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도로점용허가 과정에서는 1,000원 상당의 수입인지 이외에 어떠한 추가 비용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혹시 허가와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 공사 감리원, 설계대행사로부터 불친절행위나 부당행위, 금품/향응 등을 요구받을 때에는 절대로 이에 응하지 마시고, 반드시 국토교통부 부조리신고센터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부정부패 없는 투명하고 청렴한 행정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아낌없는 충고와 협력을 부탁드리며, 더욱 깨끗하고 청렴한 부처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 09. .

영주국토관리사무소장 김 동 현

국토교통부 부조리신고	- 인터넷 신고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부조리신고센타 - 우편신고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감찰팀 - 전화상담 : ☎ 044)201-3123 Fax : 044)201-5506

정부3.0. 국민과의 약속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찾아가는 청렴교육(9.9.)

4 청렴활동 실적 [9월]

추석맞이 청렴캠페인, 청렴 홍보물 배부(9.13.)

제2기 청렴서포터즈 활동 보고

1. 활동개요

- 일 시: 2016. 9. 13. (화) 10:00~11:00
- 장 소: 영주시 장수면 화기리(영주IC입구)
- 참석인원: 운영지원과장, 청렴 서포터즈 전원(각 파 주무계장 포함), 영주국토 직원 및 한국도로공사 직원 총 30명
- 내 용: 추석 맞이 귀경객 대상 민관 합동 청렴 캠페인 및 홍보물 배포

2. 주요활동내용

가. 민관합동 청렴 캠페인 시행(공익신고 홍보)

- 추석 귀경객 대상으로 한국도로공사 영주지사와 합동 캠페인 시행
- 공익신고 안내 현수막 활용 홍보

나. 청렴관련 홍보물 자체 제작 및 배부

- 감사담당관-6549호(2016.9.1.)와 관련하여 공익신고 홍보 포스터를 카드형식(A6크기)으로 출력하여 배부
- 귀경하시는 국민들에게 간단한 주전부리와 함께 안전 운행 기원 및 우리 소 청렴의지 전파 내용(청탁금지법 관련)의 카드를 100부 제작하여 배부(자체 디자인 및 출력으로 예산절감, A4 220g/㎡ 켄트지 사용)

3. 행정사항

- 참석자 전원 청렴 마일리지 5점 부여

사 진 대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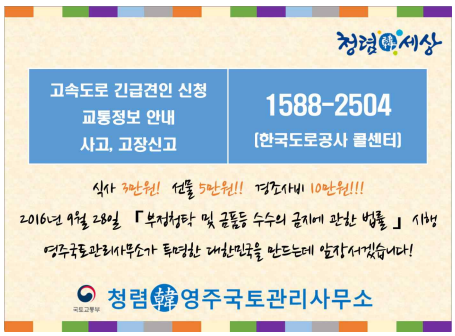

4 청렴활동 실적 (9월)

행동강령준수 모범사례(추석맞이 선물 반환, 소장, 구조물과장 9.2.)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행동강령 준수 사례

□ 개요

○ (時.所) '16. 9. 2(금)/영주국토관리사무소
○ (내 용) 추석 명절 맞이 선물 택배 반환
○ (대 상) 소장 및 구조물과장

□ 상세내용

○ 2016년 9월 2일 오후 소장 및 구조물과장 앞으로 표고버섯 택배 도착

○ **발송인**은 「국토교통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 제1호의 **직무관련자**. 공무원은 같은 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됨**. (금액의 경중 무관)

○ 운영지원과 청렴업무 담당자는 해당 택배 도착 인지 즉시 발송처에 연락하여 거절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멸실 및 훼손우려가 없으므로 택배로 반송조치 함

○ 2016.9.28. 시행 예정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기관장 및 부서장이 부서원들에게 청렴실천 의지에 대한 모범을 보임으로서 청렴한 영주국토관리사무소 건설에 이바지 기대

□ 행정사항

○ 해당 담당자 보호조치 대국민 홍보

- 국토교통부 클린 솔 자기보호센터에 관련 내용 등재
- 홈페이지 청렴공유방에 해당 사례 대국민 홍보

○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유사한 사례 발생이 예상되므로 소속 직원 교육 시행 및 신고 철저 요청

청렴 영주국토관리사무소

사 진 대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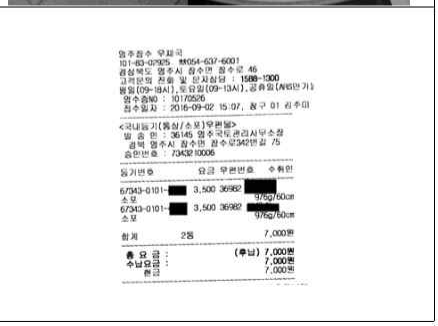

기관장 주재 직원 청렴간담회 개최(9.26.)

청렴도 향상 간담회 결과보고

□ 개 요

○ 일 시: 2016. 9. 26. (월) 10:00~11:00
○ 장 소: 소장실
○ 참 석 자: 소장, 과장, 주무계장, 장비계장
○ 개최목적: '16.9.28.「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기관장 주재로 자체 청렴도 향상 방안 논의

□ 주요내용

○ **청탁금지법 시행 관련 유의사항 전달**

- 청탁금지법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 필요
  * 청렴연의와 업계하여 소식지, 에모보고, 자체교육 등 지속적인 관심 필요
  * 전직원 대상 청탁금지법 주요내용 해설 문자 발송 예정
- 법 시행 초기에 소위 '판과라치'의 활동이 활발할 것으로 예상되니 전 직원이 품위유지에 각별히 신경을 쓸 것

○ **자체 청렴도 제고 방안 논의**

- 우리 소의 역대 청렴 시책을 발전적으로 계승하여 다른 소와 차별화되는 시책을 발굴 할 수 있도록 각 과에서 적극 협조
- 청탁금지법 시행과 관련하여 국민의 청렴에 대한 기대치가 계속 높아질 전망인 만큼 타기관 모범사례를 적극 도입할 것
- 청렴에 대한 공감과 합의 도출에 주력, 자존감을 높여주는 시책 추진
  * 직원의 청렴 피로도를 고려하여 의무적, 강제적 시책 가급적 지양
  * 장기적 계획하에 건강한 청렴 생태계를 조성 할 수 있도록 지속 관심 필요

사 진 대 지

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요약

□ 배경 및 경과

○ 공공부문의 부패로 인해 정부신뢰 저하 및 대외신인도 하락 우려

* 일반국민의 62.8%가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고 응답('14 권익위 조사)

○ '12 국민권익위원장이었던 김영란이 추진('04 여성 최초 대법관)

○ '15.3.24 : 국무회의 의결, '15.3.27 : 공포, '16.9.28 : 시행

□ 법률 적용 대상

○ 적용대상 : 공직자등, 공직자등의 배우자, 공무수행사인, 일반국민(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금지 금품등을 제공한 민간인)

□ 부정청탁의 금지(아래 사항 총 15개로 구체화 함, 예외사유 7개 규정)

① 인·허가 등을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② 각종 행정처분이나 형벌을 감경·면제하도록 하는 행위
③ 채용·승진 등 공직자의 인사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④ 심의·의결 등의 권한을 가진 위원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⑤ 공공기관의 수상·포상 등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⑥ 입찰·시험 등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⑦ 특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⑧ 정부의 각종 지원금 배정 등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⑨ 특정인이 일감·용역 등을 사용하거나 독점하도록 하는 행위
⑩ 학교의 입학·성적 등의 업무를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⑪ 징병검사·부대배치 등 병역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⑫ 공공기관의 평가·판정 등을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⑬ 단속·감사 대상에서 특정인을 배제하거나 결과를 조작하는 행위
⑭ 수사·재판 등에 개입하도록 하는 행위
⑮ ①~⑭에 대해 권한 밖의 일을 하도록 하는 행위

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요약

○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시 제재

유형	위반행위	제재수준
부정청탁 금지	공직자에게 직접 부정청탁을 한 이해당사자*	제재 없음
	공직자에게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한 이해당사자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3자를 위하여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한자(공직자 제외)	2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3자를 위하여 다른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	2년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금품수수 금지	**<1회 1백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백만원 초과 금품등 형사처벌>** 동일인으로부터 직무관련 및 명목 여하 불문하고 1회 1백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백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 *배우자가 수수한 금품등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 *금품등을 공직자 또는 배우자에게 제공한 자	3년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1백만원 이하 금품등 수수 과태료 부과>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백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 *배우자가 수수한 금품등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 *금품등을 공직자 또는 배우자에게 제공한 자	수수금액 2배이상 5배이하 과태료
	기준초과 강의 사례금을 수수한 공직자	500만원 이하 과태료

* 공직자가 직접 부정청탁을 할 경우 과태료와 별개로 징계대상
* 이해당사자가 자신의 일에 대하여 직접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하는 행위는 금지

4 청탁금지법 FAQ

1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 관련

Q. 사례금을 받지 않고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는지?

☞ 사례금을 받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직무와 관련한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해야 함

tip) **대가를 받지 않는 외부강의·회의 등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아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기고 등을 하는 경우 신고대상임**

Q.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는지?

☞ 청탁금지법에서는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외부강의등은 신고대상이 아님

tip) **우리 부의 경우 행동강령 개정(안)에서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외부강의도 신고해야할 의무가 있음**

Q. 외부강의등의 횟수제한은 없는지?

☞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의 횟수제한은 없으나, 행동강령에서는 제한하고 있음

tip) **우리부의 경우 행동강령 개정(안)에서 월3회로 제한 할 예정임**

Q. 직무와 관련 없는 내용으로 출강(저글링을 잘하여 퇴근 후 청소년을 지도)할 때에도 신고해야 하는지?

☞ 외부강의등에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직무관련 여부를 따지지 않고 신고대상임

Q. 소속기관의 장이 외부강의등에 참석할 경우 누구에게 신고해야 하는지?

☞ 지방청장 등 소속기관장이 외부강의등에 참석할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서를 제출하면 됨

Q. 외부강의등 사례금을 지급받을 경우 1회 기준은?

☞ 외부강의등은 1일 1시간 1회를 기준으로 상한액을 결정

tip) **지급주체, 강의등 일(日)자, 대상, 내용(주제)이 모두 같은 경우 1회임**

지급주체	강의등 일자	대상	내용(주제)	지급대상 여부
같은 경우	같은 경우	동일	동일	X
		동일	상이	○
		상이	동일	○
	다른 경우	불문		○
다른 경우	불문			○

Q. 외부강의등에 원고료를 별도로 받을 수 있는지?

☞ 외부강의등 대가기준은 사례금 상한액에 원고료뿐만 아니라 일체를 사례금이 포함되어 별도로 원고료를 수령할 수 없음

Q. 상한액 제한대상이 아닌 외부강의 등은?

☞ 직무관련성이 없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지 않고 요청받아야 하며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거나 회의 형태가 아닌 용역이나 자문임

tip) **정당한 권원에 의한 용역이나 자문인 경우에도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할 수 없음**

Q. 외부강의등에 관한 제재 수준은?

구분		청탁금지법
사전신고 미이행		징계처분(법 제21조)
신고 미이행		징계처분(법 제21조)
기준초과 수령	신고 미이행	징계처분(법 제21조) 및 500만원 이하 과태료(법 제23조제4항)
	반환 미이행	

2 금품등 수수 금지 관련

<수수 금지 금품등 관련>

Q.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수수하면 언제나 처벌되나요?

☞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수수하는 행위가 금지됨. 다만 직무와 관련 없이 1회 100만원 이하 금품등이나 법 제8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8가지 예외사유에 해당하면 수수 금지 금품등에서 제외됨

Q. 법 제8조제3항제2호의 가액범위 내의 경우라면 직무관련성·대가성 유무에 관계없이 수수해도 되는지?

☞ 가액기준 내라도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이 있으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을 벗어나 허용되지 않고 나아가 형법상 뇌물죄로 형사처벌됨

Q.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된 자로부터 3만원 저녁식사를 접대 받고, 주변 카페로 자리를 옮겨 6000원 상당의 커피를 제공받은 경우?

☞ 식사접대행위와 음료수 접대행위가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성이 있어 1회로 평가 가능하며, 음식물 3만원 가액기준을 초과하였으므로 청탁금지법 위반임

Q. 시가 7만원 상당의 선물을 할인을 받아 5만원에 구입하여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선물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 시가와 구매가가 다른 경우 영수증 등으로 실제 구매가가 확인되면 구매가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음(다만, 일률적인 할인이 아닌 구입자에 대해서만 특별한 할인이 이루어진 경우, 일부를 현금이나 포인트로 지급한 경우 등이 확인되면 이를 반영한 실제 구입가액이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임)

Q. 골프접대의 경우도 선물로 인정되어, 가액기준 내라면 수수가 가능한지?

☞ 제8조제3항제2호의 선물은 물품이나 유가증권 기타 이에 준하는 것에 한정되며, 편의제공에 해당하는 골프접대는 선물로 볼 수 없어 가액기준(5만원) 이하라도 허용되지 않음

Q.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3만원 이하의 식사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아 연 3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 원칙적으로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여부 산정 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금품 등의 가액은 제외됨. 그러나 사례의 경우 3만원 이하의 식사를 연 100회 넘게 제공한 경우에는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날 가능성이 크므로 예외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Q. 금지된 금품등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도 위반인지?

☞ 공직자등은 금지된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 뿐 만 아니라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도 금지되며,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금지된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도 금지됨

Q. 공직자가 자신이 소속된 공공기관에서 주최하는 체육행사에 경품을 협찬할 것을 직무관련자에게 요구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 공직자등은 금지된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 뿐만 아니라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되므로 청탁금지법 위반임

Q. 직무와 관련된 공직자가 승진한 경우 10만원 상당의 난 선물이 가능한지?

☞ **경조사는 결혼, 장례의 경우에 한정**되며, 승진의 경우 경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교·의례 목적으로 5만원 이하의 선물만 수수 가능

Q. ○○ 중앙부처 산하 공기업 직원 A와 B는 5만원씩 개인자금으로 갹출하여 새로 부임한 ○○ 중앙부처 총괄과장 甲에게 10만원 상당의 난을 선물했습니다. 청탁금지법상 어떠한 제재를 받나요?

☞ 과장甲은 직무과 관련하여 10만원 상당의 선물을 수수하였으므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며(제8조제2항,제23조제5항제1호), 징계 대상에도 해당합니다.(제21조)
공기업 직원 A, B는 각 5만원씩(선물 5만원 범위 내)을 냈으나, A, B가 가담하여 위반행위의 실현에 기여를 한 경우 가담자 각자가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A와 B는 각자 공직자등에게 제공한 금액인 10만원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

Q. 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1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는 허용되는데, 여기서 경조사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 경조사의 범위는 본인 및 직계비속의 결혼과 본인과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의 사망에 한정됨. 그 밖에 생일, 돌, 회갑, 집들이, 승진, 전보, 퇴직, 출판기념회 등은 경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Q. 공직자등이 경조사비로 15만원을 받은 경우 가액한도를 초과한 부분(5만원)만 반환하면 되나요?

☞ 초과부분만 반환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 다만, 제공자는 경조사비 전액을 기준으로 과태료 부과. 공직자등이 초과분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전액을 기준으로 과태료 부과

Q. 음식물과 선물을 같이 수수하는 경우 그 가액을 합산하고 5만원을 초과하면 안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직무관련된 공직자에게 45.000원 식사를 접대하고 5000원 상당의 선물을 하는 경우 법 위반이 아닌지?

☞ 이 경우에도 음식물은 3만원, 선물은 5만원 가액기준 내 이어야 함. 따라서 음식물이 3만원 가액기준을 초과하였으므로 청탁금지법 위반임

Q. 7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은 경우 선물의 가액기준(5만원)을 초과한 2만원만 반환하면 되는지?

☞ 가액범위(5만원)를 초과한 선물을 받은 경우 선물 전부가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므로 받은 선물 전부를 반환해야 함

Q. A가 식당에 미리 결제를 해 두고 공직자 B에게 연락하여 해당 식당에서 3만원 이하의 식사를 하게 하는 경우 허용되는지?

☞ 예외사유인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은 제공자와 공직자가 함께 하는 식사 등을 의미하므로 허용되지 않음

Q. 식사를 한 후 1인당 식사비가 5만원이 나온 경우 3만원은 제공자가 결제하고 2만원은 공직자등이 결제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 음식물 가액기준 3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직자등이 지불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Q. 기관장이 소속 직원에게 업무추진비로 화환(10만원)을 보내고 별도로 사비로 경조사비(10만원)를 줄 수 있는지?

☞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제공하거나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법 제8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가능

Q. 식사를 했는데 각자에게 소요된 비용이 불분명 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원칙적으로는 실제 각자가 소비한 음식물의 가격으로 판단해야 함. 다만, 실제 각자에게 소비된 비용을 산정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균등하게 분할한 금액 즉, n분의 1을 한 금액으로 판단

Q. ◇◇공공기관 내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는 사무관A와 甲(돌은 입사동기)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이웃으로 함께 술과 식사를 하였고, A가 식사대금 총 8만원을 결재한 경우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인가요?

☞ 甲은 직무과 관련하여 A로부터 4만원 상당의 술과 식사를 제공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甲과 A는 청탁금지법상 제재 대상이 아닙니다.

tip) **다만, 담당하는 업무내용, 업무처리 방향, 결과등에 영향력을 미칠수 있는지 여부, 직무수행에 따라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직무관련성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

Q. 월 정기 회비를 납부하는 같은 소속 직원들로 구성된 모임에서 회원의 경조사가 발생하여 회칙에 따라 50만원을 지급할 수 있는지?

☞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 상조회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법 제8조제3항제5호)에 해당되어 지급 가능

Q. 미혼의 공직자등인 A가 공직자등이 아닌 미혼의 이성 B와 교제하며 직무와 관련 없이 1회 100만원,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여 선물을 받을 수 있는지?

☞ 원칙적으로 1회 100만원,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직무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나, A와 B는 연인관계에 있으므로 수수의 동기·목적, 당사자의 관계, 수수한 금품등의 가액, 청탁과 결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되어 수수 가능

Q.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10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고, 지체없이 반환하고 신고한 경우 선물 제공자는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 직무와 관련된 공직자에게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선물을 제공한 경우 실제 공직자가 수수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청탁금지법 위반임

Q. 직무관련자가 공직자에게 금지된 금품등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공직자가 그 자리에서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 직무와 관련된 공직자에게 금품등 제공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도 청탁금지법 위반임. 이 경우 금품등 가액에 따라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됨(다만, 공직자는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처벌대상에서 제외)

Q.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하면 배우자가 처벌받는지?

☞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금지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해당 공직자등이 그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공직자등은 처벌됨. 즉, 배우자는 청탁금지법에 따라 처벌받는 것은 아님(다만, 변호사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Q.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가 언제나 금지되나요?

☞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고,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 없으면 수수 가능

Q. 외국 정부기관 고위급 인사 교류 시(회의/기관방문 등) 주고받는 선물의 경우도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지?

☞ 국내 공직자등이 외국인으로부터 선물을 받는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나, 외국 또는 직무관련 외국인으로부터 받는 선물은 법 제8조제3항제8호(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여 공직자윤리법령에 따라 신고 및 처리

Q. 무이자 소비대차의 경우에도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 이자 상당액은 사실상 증여를 위장한 가장된 법률관계로 평가가능하므로, 무이자 소비대차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권원에 따른 것으로 보기 곤란

Q.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은 허용되는데, 이 경우 참석자 모두에게 똑같이 제공되는 것이어야 하는지?

☞ 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발제자, 토론자, 일반 참석자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차등하여 제공할 수 있음

Q. 공직자등이 공직자등이 아닌 민간인에게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도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나요?

☞ 청탁금지법에서는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수수하거나 공직자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제재하고 있을 뿐, 공직자등이 아닌 민간인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청탁금지법상 규율대상이 아님

Q. 월 정기 회비를 납부하는 같은 소속 직원들로 구성된 모임에서 회원의 경조사가 발생하여 회칙에 따라 50만원을 지급할 수 있는지?

☞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 상조회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법 제8조제3항제5호)에 해당

Q. 결혼식에 참석한 하객에게 제공되는 가액범위를 초과하는 식사는 허용될 수 없는지?

☞ 경조사에 참석한 하객에게 접대하는 식사는 우리 사회의 전통 관습이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는 것이므로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도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함

Q. 직무관련자를 집으로 초대하여 음식물을 제공한 경우 허용되는지?

☞ 식사 초대 시 음식물의 가액산정은 재료비 구입 영수증 등 신빙성이 담보되는 자료가 우선하되, 이를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반행위자에게 유리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함

Q. 부친상을 당한 공무원이 조의금으로 사촌에게 200만원을 받는 것이 허용되는지?

☞ 사촌은 민법상 친족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수수금지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음

<금품등 신고 처리 관련>

Q.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된 자로부터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식사접대를 받은 후 같은 금액의 식사를 직무관련자에게 제공한 경우 면책이 되는지?

☞ 두 행위는 별개의 행위로 면책이 되는 것은 아님. 공직자가 식사접대를 받은 후 나중에 같은 금액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것은 제재대상에서 제외되는 금품등의 반환으로 볼 수 없으므로 면책되지 않음

Q. 명절에 직무와 관련된 협회의 직원으로부터 기관이나 부서로 배송되어 온 선물은 받아도 되는지요?

☞ 선물이 누구로부터 온 것인지 특정하기 어렵거나 선물의 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해당 기관의 청탁방지담당관과 상담한 후 처리해야 함 (특정 직원 앞으로 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관이나 부서로 온 선물은 기관장이나 부서장에게 온 선물로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기관장이나 부서장이 반환이나 신고 등 절차를 이행해야 함)

Q.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책상에 놓고 가거나 택배로 발송 또는 배우자에게 전달하고 가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 금품등 수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반환·인도하고 신고하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됨

Q. 공직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하고 반환해야 하는데, 여기서 지체 없이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 지체 없이는 불필요한 지연 없이를 의미하고, 지체 없이 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를 의미함. 지체 없이의 판단은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사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함

Q. 공직자가 자진하여 신고는 하였으나 지체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제재가 되는지?

☞ 공직자등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지체 없이 신고한 경우에만 제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다만 지체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제재가 감면될 수 있음

3 부정청탁 금지 관련

<부정청탁 성립 요건 관련>

Q. 부정청탁을 하였으나 그에 따라 공직자등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제재대상이 되나요?

☞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을 한 내용의 실현 여부와 무관하게 부정청탁행위 그 자체를 금지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부정청탁 내용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에도 부정청탁을 한 자는 제재대상에 해당함

Q.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이란 무엇인가요?

☞ 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부패 빈발분야의 14가지 대상직무와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거나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권한을 벗어나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가 부정청탁에 해당함(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의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하도록 하는 행위를 포함)

Q. 법에 열거된 14가지 직무와 관련한 부정청탁 외의 청탁은 해도 되나요?

☞ 청탁금지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부정청탁행위 외에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청탁은 공무원 행동강령 또는 공공기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행동강령이나 윤리강령에 따라 규율됨

Q. 건설업체 직원 A가 구청인허가 담당자 甲에게 '민원을 빨리 처리해달라', 또는 '서둘러 허가해 달라' 고 부탁했는데, 이런 부탁은 부정청탁에 해당하나요?

☞ 형식상 '서둘러 허가를 해 달라'는 부탁이 실질적으로는 '법령을 위반해서라도' 또는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권한을 벗어나서라도' 처리해 달라는 의미의 청탁이었고, 이에 대해 청탁을 하는 자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 간에 내심의 의사가 합치하여 법령을 위반한 직무수행(관계법령상 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를 해줌)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하여 줄 것을 신청, 요구하거나 그 진행상황, 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확인, 문의 등을 하는 행위에 해당할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음(제5조제2항제4호).

Q. 이해당사자는 자신의 일에 관하여 직접 부정청탁을 해도 되나요?

☞ 이해당사자가 직접 자신을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은 아니지만 금지되는 행위이므로 부정청탁자가 공직자등인 경우 징계대상은 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은 형사처벌 대상임

Q.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어떠한 조치를 해야 하나요?

☞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이 처음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장 또는 그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해야 함

Q.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이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받나요?

☞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이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있고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에 따라 징계처분 대상에 해당함

Q. 공직자등이 처음 부정청탁을 한 사람에게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를 하였는데, 그 후 다른 사람이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 신고해야 하나요?

☞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동일한 부정청탁인지 여부는 신고의무가 부과되는 공직자등을 기준으로 내용의 본질적 동일성 여부로 판단하므로 처음 부정청탁을 한 사람과 다른 사람이 동일한 내용으로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 신고해야 함

Q. 공직자등의 배우자도 법 적용대상인지?

☞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이 금지되고, 이 경우 공직자등이 이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공직자등이 처벌받게 됨. 여기에서 배우자는 법률에서 명시적 규정으로 사실혼 배우자를 포함하고 있지 않는 한 법률혼 배우자만을 의미함

5 청탁금지법 퀴즈(출처 한국경제_2016.9.10.)

1. 다음 중 과태료 부과대상은?
①일간지 기자 A가 포럼에 참석한 뒤 포럼회원인 출입처 직원으로부터 3만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받았다.
②방송국 PD B씨는 대학동기인 연예기획사 대표로부터 10만원의 식사를 대접받았으나 기획사 소속 연예인에 대한 청탁은 없었다.
③일간지 연예부 기자 C씨는 명절을 맞아 찾아간 고향에서 고향친구인 현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부터 10만원의 식사를 접대받았다.
④방송국 기상예보 담당 기자 D씨는 연말에 초등학교 동창회에 참석했다가 동문인 화가로부터 30만원 상당의 그림을 선물받았다.
정답: ② 업무이야기를 않더라도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가액 한도 이상 받으면 안 됨.

2. 직무관련자가 공직자에게 10만원의 경조사비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는?
①공직자 A씨가 부친상을 당했다.
②공직자 A씨의 아들이 결혼식을 올렸다.
③공직자 A씨가 새로운 배우자를 만나 재혼했다.
④공직자 A씨가 자신의 환갑잔치를 열었다.
정답: ④ 경조사는 본인과 직계존비속의 결혼과 장례만 해당하며 생일, 승진등은 해당없음.

3.다음 중 김영란법상 제재대상은?
①공직자 A씨의 배우자는 A씨 몰래 A씨 부처의 산하기관 직원으로부터 12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았다.
②공직자 A씨의 아들은 A씨 부처의 산하기관 직원으로부터 30만원의 현금을 받아 아버지에게알리지 않고 자신이 모두 썼다.
③공직자 A씨는 배우자가 산하기관 직원으로부터 50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았음을 뒤늦게 알고 소속기관에 신고했다.
④공직자 A씨는 아들이 산하기관 직원으로부터 10만원 상당의 선물을 A씨 자신에게 전달해달라며 받은 사실을 알았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정답: ④ 아들은 제재대상이 아니지만 단순 전달자일 경우 공직자가 받은 것으로 간주.

식사는 **부가세를 포함하여** 3만원 초과 금지
선물은 **택배비를 제외하고** 5만원 초과 금지
경조사비는 10만원을 넘는 금액 즉시 반환

참여하는 청렴 **소통**하는 청렴 **지속**적인 청렴

영주국토관리사무소 전 직원은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렴 소식지 청성사달 vol.2

2016년 9월 발행
2016년 9월 인쇄
펴낸곳 : 국토교통부 영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감 수 : 국토교통부 영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주 소 : 경상북도 영주시 장수면 장수로342번길 75
전 화 : 054-630-0011
팩 스 : 054-630-0029

국토교통부 청렴韓영주국토관리사무소